

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심사 보고

의안 번호	4219
----------	------

2025. 1. 16.
총무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. 8. 서영배(중동) 의원
나. 회부 일자: 2025. 1. 8. 회부
다. 상정 일자: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(2025. 1. 16.) 상정,
“원안의결”

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이유

- 현대인의 일상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, 다중이용시설, 신축 공동주택,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(안 제3조 ~ 제4조)
- 관리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측정(안 제6조 ~ 제7조)
-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(안 제8조)
-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(안 제9조)
- 보고 및 검사, 개선 명령(안 제10조 ~ 제11조)
-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및 교육·홍보(안 제12조 ~ 제13조)

3. 검토 의견

-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에 근거하여 다중이용 시설, 신축 공동주택,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광양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,
- 본칙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본칙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,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(안 제3조 ~ 제4조), 관리계획의 수립(안 제5조),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측정(안 제6조~제7조),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(안 제8조),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(안 제9조), 보고 및 검사, 개선 명령(안 제10조~제11조),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및 교육·홍보(안 제12조~제13조) 등을,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음.
-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령 및 조례안의 내용과 조문 체계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.

5. 심사 결과: 원안의결(서영배(중동) 의원 회피, 출석위원 5명)

6. 소수의견의 요지: 해당 없음.

붙임 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

광양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,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광양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중이용시설”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공동주택”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.
3. “대중교통차량”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.
4. “다중이용시설등”이란 다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.
5. “오염물질”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및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.
6. “실내공기질”이란 사면이 벽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.
7. “건강취약계층”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험이 높은 어린이, 노인, 임산부,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, 공동주택,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는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 및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.

제5조(관리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의 기본계획과 법 제4조의4의 시행계획에 따라 적절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을 환경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,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을 할 경우 「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및 「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따른다.

제6조(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)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「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른다.

제7조(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)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

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동안 기록·보존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, 측정횟수, 측정시기,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.

제8조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)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,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, 측정방법, 측정결과외 제출·공고시기·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.

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.

제9조(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)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, 측정대상차량, 측정

횟수,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에게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관리·운행을 권고를 할 수 있다.

제10조(보고 및 검사)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개선명령)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.

제12조(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)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·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

2.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